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5년 6월 3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이 주 호

●대통령령 제3561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의2 단서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8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55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연탄에 대한 한시적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연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며,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